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기준금액 상향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 부여 〉

■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236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기준금액 상향<br>(안 제38조제1항) ..... | 2  |
| 2.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가중치 부여<br>(안 제38조제6항) .....   | 10 |



##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원택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9. 24.

다. 회 부 일 : 2024. 9. 25.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규정을 두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및 재정 규모가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의 기준액은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어 이를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시 낙후된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발전된 수도권 지역에 비해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져 신규 사업 유치가 불리한 점이 있으므로 지역균형 발전 촉진을 위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기준액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규모 6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및 재정 규모에 맞게 조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및 제6항 등).

### Ⅲ. 검토의견

#### 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 상향(안 제38조제1항)

| 현행                                                                         | 개정안                                                                             |
|----------------------------------------------------------------------------|---------------------------------------------------------------------------------|
|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br>- 총사업비 <u>500억원</u> 이상,<br>국가 재정지원 규모 <u>300억원</u> 이상 |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 상향<br>- 총사업비 <u>1,000억원</u> 이상,<br>국가 재정지원 규모 <u>600억원</u> 이상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지정한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sup>1)</sup> 등의 연구기관이 사업의 경제성·정책성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분석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대안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점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제도임.<sup>2)</sup>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서 건설공사 포함 사업, 지능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sup>3)</sup>

1) 국가연구개발(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수행함.

2) 참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DB) 누리집

3)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개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6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과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은 1999년과 2006년에 각각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계속 동일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음.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도입된 1999년과 비교하여 2023년의 경우 명목GDP는 591조원에서 2,236조원으로 약 3.8배 증가하였고, 정부의 재정규모(본예산 총지출 기준)도 145조원에서 639조원으로 약 4.4배 증가하였으며,<sup>4)</sup> 물가도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으로 1999년과 비교하여 2023년에는 1.8배 상승하였음.<sup>5)</sup>

#### < GDP(명목)·총지출 비교 >

(단위: 조원)

| 구분              | 1999년 | 2023년 | 비고        |
|-----------------|-------|-------|-----------|
| GDP(명목)         | 591   | 2,236 | 약 3.8배 증가 |
| 총지출<br>(본예산 기준) | 145   | 639   | 약 4.4배 증가 |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국민계정(2015년기준), 기획재정부, 2024. 10

-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 4) 국가통계포털(KOSIS), 기획재정부, 2024. 7.
- 5) 2020년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 개편한 소비자물가지수 데이터에 따르면 1999년 소비자물가지수는 61.76을,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는 111.59를 기록함(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이에 개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이후 물가 상승 및 재정규모 확대를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려는 것임.

물가상승과 재정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의 기준금액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계속 증가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의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품질저하 또는 기간 지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최근 5년간 예비타당성조사 평균 조사기간은 16.7개월로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기간인 9개월<sup>6)</sup>을 7개월 이상 초과하고 있는 실정임.

#### < 최근 5년간 연도별 평균조사기간 >

(단위: 건, 개월)

|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평균   |
|----------|------|------|------|------|------|------|
| 조사완료 사업수 | 18   | 34   | 13   | 28   | 10   | 20.6 |
| 조사기간     | 14.1 | 19.3 | 16.2 | 16.3 | 14.3 | 16.7 |

자료: 기획재정부, 2024. 8.

6)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9조(예비타당성조사 기간) ①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은 9개월(철도부문 12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대 18개월(철도부문 24개월) 이내에서 수행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대상사업의 성격상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이 9개월(철도부문 12개월)을 초과할 것이 명백한 경우. 이 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수행기간 종료 시점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수행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제34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 때, 중앙관서의 장은 변경된 사업내용 등과 함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기한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여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에 조사 역량을 집중해 예비타당성조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조사기간을 단축하여 해당 사업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음.

반면, 물가상승이나 재정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기준금액을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성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2019년 이후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사업(118개) 중 개정안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적용 시 19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되는데, 이들 사업 중 3개(총 사업비 1,932억원)의 사업은 AHP<sup>7)</sup>가 0.5 이하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sup>8)</sup>

#### <2019년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완료사업 중 개정안 적용시 제외 사업 현황>

| 조사완료 사업            | 개정안 적용시 제외 사업   |                |
|--------------------|-----------------|----------------|
|                    |                 | AHP 0.5 이하 사업  |
| 118개               | 19개             | 3개             |
| (총사업비 1,150,458억원) | (총사업비 17,363억원) | (총사업비 1,932억원) |

\* 총사업비는 부처요구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2024. 10.)

7)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란 종합평가기법으로서, 의사결정 목표 또는 평가기준이 다중적인 경우, 이를 세부 요인으로 계층화하여 세부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 비교 등을 통해 세부 요인들을 순위화시키는 기법으로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BC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시행이 미시행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해석함.(시사경제용어사전, 2017.11., 기획재정부)

8) 기획재정부 제출자료(2024. 10.)를 토대로 작성

이와 같이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아 예산에 반영되는 경우 예산 낭비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또한,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건수의 감소 추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 상향은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이 >

(단위: 건, 조원)

| 구분   | 면제 건수 | 규모   |
|------|-------|------|
| 2005 | 3     | 0.7  |
| 2009 | 30    | 26.0 |
| 2014 | 40    | 14.5 |
| 2019 | 47    | 36.0 |
| 2020 | 31    | 30.0 |
| 2021 | 31    | 10.5 |
| 2022 | 26    | 17.2 |
| 2023 | 28    | 12.0 |

자료: 기획재정부, 2024. 8.

참고로 최근 5년간 분야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현황은 다음과 같음.

### < 최근 5년간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

(단위: 건, 조원)

| 구분   |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건수 |              |              |              |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규모 |                |                |               |
|------|---------------|--------------|--------------|--------------|---------------|----------------|----------------|---------------|
|      | 전체            | SOC          | R&D          | 기타           | 전체            | SOC            | R&D            | 기타            |
| 2019 | 71            | 24<br>(33.8) | 31<br>(43.7) | 16<br>(22.5) | 63.6          | 30.6<br>(48.1) | 27.6<br>(43.3) | 5.4<br>(8.5)  |
| 2020 | 52            | 10<br>(19.2) | 37<br>(71.2) | 5<br>(9.6)   | 31.4          | 5<br>(15.9)    | 25.5<br>(81.2) | 1<br>(3.2)    |
| 2021 | 60            | 21<br>(35.0) | 23<br>(38.3) | 16<br>(26.7) | 74.9          | 26.9<br>(35.9) | 20.5<br>(27.3) | 27.6<br>(3.7) |
| 2022 | 42            | 14<br>(33.3) | 16<br>(38.1) | 12<br>(28.6) | 30.8          | 12.8<br>(41.6) | 9.1<br>(29.5)  | 8.9<br>(2.9)  |
| 2023 | 42            | 22<br>(52.4) | 12<br>(28.6) | 8<br>(19.0)  | 41.8          | 31.6<br>(75.6) | 7.9<br>(18.9)  | 2.3<br>(5.5)  |

자료: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 8.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변화된 국가경제규모 및 재정규모의 추세를 반영하여 SOC와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금액에 대해서만 총사업비를 500억에서 1,000억원으로, 국가 재정지원 규모를 300억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바 있음.<sup>9)</sup>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기재위에서 경제·재정규모 확대, 사업규모화·융복합화 추세 등을 종합고려하여 SOC·R&D 사업에 대해서만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을 변경기로 한 만큼, 그 논의·심사 결과를 존중할

9) 제405회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2023.4.12.)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참고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과 관련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4건(2024. 9. 30.기준)이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관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30. 기준)

| 구분                    | 내용                                                                      |
|-----------------------|-------------------------------------------------------------------------|
| 정성호의원안<br>(제2200008호) | - SOC, R&D 사업: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br>- 그 외 사업: 현행과 같음 |
| 박덕흠의원안<br>(제2200829호) |                                                                         |
| 최수진의원안<br>(제2200269호) | -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
| 이원택의원안<br>(제2204236호) | -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600억원 이상                                  |

### ※ 신·구조문 대비표

[illegible]

## 2.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가중치 부여 (안 제38조제6항)

| 현행                                  | 개정안                                         |
|-------------------------------------|---------------------------------------------|
| <p>&lt;신설&gt;<br/>※ 현행: 지침으로 규정</p> | <p>○ 지역별 인구 및 경제 규모를 고려한 지역균형 발전 가중치 부여</p> |

개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역별 인구 및 경제규모가 반영된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실적으로 비수도권의 투자 여건이 좋지 않아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 대한 신규 투자가 어렵게 됨으로써 다시 지역발전이 어려워지는 악순환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sup>10)</sup>,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두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지역균형발전 가중치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신규 투자 활성화와 지속적인 사업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0) 도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권역별 B/C 비율을 검토한 결과 강원과 전남권은 평균 0.4대이고, 전북과 경남권은 0.5대, 특별·광역시시는 0.98로 나타나 B/C의 지역별 격차가 뚜렷하며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통과율은 특별·광역시가 69%인데, 강원권은 20%대에 불과하여 지역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 방법 연구」, 2019. 12).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첫째,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사방법 및 절차 등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기획재정부훈령 제678호)에서 정하고 있음. 동 지침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기본 수행절차는 ‘①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등을 통한 사업의 쟁점 파악 → ② 경제성 분석 → ③ 정책성 분석 → ④ 지역균형발전 분석 → ⑤ 종합평가 → ⑥ 정책제언’ 순으로 규정되어 있음.<sup>11)</sup> 이때, 사업타당성에 대한 종합평가는 각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기준분석의 일종인 계층화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며, AHP 수행 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기술성 등에 대한 평가 가중치 범위를 적용함.

#### < 예비타당성조사 기본 수행절차 >

| 구분             | 내용                                   | 비고                         |
|----------------|--------------------------------------|----------------------------|
| 사업의 개요 및 쟁점 파악 | 사업의 개요                               | 배경, 목적, 추진경위, 추진주체, 내용 등   |
|                | 기초자료 분석                              | 자연환경·생활환경·사회·경제적환경·기술환경 자료 |
| 경제성 분석         | 비용·편익 분석(B/C 분석)<br>비용·효과 분석(C/E 분석) | B/C 비율 1.0 이상<br>경제성 有     |

1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르고 있고, 기타 재정사업 중 복지 및 소득이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도 별도의 수행절차 및 평가항목을 적용하고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 방법은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정책적 타당성 분석,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으로 구성됨.

|           |                            |                                      |
|-----------|----------------------------|--------------------------------------|
| 정책성 분석    | 사업추진 여건                    | 지역주민 사업태도 등<br>외부여건 등                |
|           | 정책효과                       |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br>환경성 평가, 안전성 평가 등 |
|           | 사업 특수평가항목                  | 재원조달 위험성 등                           |
| 지역균형발전 분석 | 지역낙후도 개선효과,<br>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 정보화사업은 기술성<br>분석으로 대체 가능             |
| 종합평가      | 계층화분석법(AHP)                | AHP 비율 0.5 이상<br>사업시행 적정             |
| 정책제언      |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 등              |                                      |

자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 부분만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도록 하는 것은 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 AHP 수행시 평가항목 가중치 >

(단위: %)

| 구분         |         | 경제성   | 정책성   | 지역균형발전 | 기술성   |
|------------|---------|-------|-------|--------|-------|
| 건설사업       | 비수도권 유형 | 30~45 | 25~40 | 30~40  |       |
|            | 수도권 유형  | 60~70 | 30~40 |        |       |
| 정보화사업      | B/C     | 40~50 | 20~30 |        | 30~40 |
|            | E/C     | 30~40 | 20~30 |        | 40~50 |
| 기타<br>재정사업 | B/C     | 25~50 | 50~75 |        |       |
|            | E/C     | 20~40 | 60~80 |        |       |

자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둘째,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상에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장치들이 이미 마련되어있음. 2014년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

제12)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2019년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의 경제성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낮추고 지역균형발전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 평가 시 지역낙후도 감점제를 제외13)하는 등 예비타당성조사에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항을 보완하였음.

| ＜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항목 개편 현황(2019. 4.) ＞ |          |          |          |
|-----------------------------------|----------|----------|----------|
| 구분                                | 기존       | 개편       |          |
|                                   |          | 비수도권     | 수도권      |
| ① 경제성                             | 35 ~ 50% | 30 ~ 45% | 60 ~ 70% |
| ② 정책성                             | 25 ~ 40% | 25 ~ 40% | 30 ~ 40% |
| ③ 지역균형발전                          | 25 ~ 35% | 30 ~ 40% | -        |

자료: 관계부처 합동,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2019. 4. 3.

또한, 2022년 12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균형발전효과 분석항목으로 지역낙후도 개선효과를 신설하고 지역낙후도 개선효과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에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항목을 추가하는 등 사업별·지역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하였음.

12)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중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13) 이전에는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비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지역낙후도에서 감점을 받았으나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으로 지역낙후도가 가·감점제에서 가점제로 변경되어 비수도권 대도시의 불이익이 해소됨.

##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2022. 12.)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2022. 12. 20. 시행)

제64조(균형발전효과 분석) 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균형발전효과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분석하여야 한다.

1.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지역낙후도가 개선되는 효과로서 해당사업·지역에 관련된 균형발전지표 등을 활용하여 평가

② 제1항 제1호의 지역낙후도 개선효과는 소관부처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2022. 12. 20. 시행)

[별표 1]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제출양식

### ⑥ 지역균형발전 요인

|              |                                                                                |
|--------------|--------------------------------------------------------------------------------|
| ③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이 시행 되는 지역의 지역낙후도가 개선되는 효과를 해당사업·지역에 관련된 균형발전지표 등을 활용하여 기술 |
|--------------|--------------------------------------------------------------------------------|

또한,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도 국가연구개발 사업 중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sup>14)</sup>의 경우 사업별 특수평가항목에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반영한다는 점<sup>15)</sup>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부여는 예비타당성조사 관련지침 등을 통해 이미 반영하여 운영 중이며, 가중치 부여 등 세부적인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4) 예)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등

15)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정책적 타당성 분석)

② 정책적 타당성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특수평가 항목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지역균형발전: 입지가 특정 지역으로 사전에 지정되는 등의 경우 지역낙후도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 ⑤<br>(생략)<br><u>&lt;신설&gt;</u>                                                                                                   |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 ⑤<br>(현행과 같음)<br>⑥ <u>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역별 인구 및 경제 규모가 반영된 가중치를 부여하여야 한다.</u> |
| ⑥ (생략)<br>제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① (생략)<br>②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하여 위탁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제2항 및 <u>제6항</u> 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⑦ (현행 제6항과 같음)<br>제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br>② -----<br>-----<br>----- <u>제7항</u> -----<br>-----<br>-----.                  |
|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

문 의 처

02)6788-5151